

결 정

2018 - 401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 「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해~」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23일자 「남 성, 아랫도리에 붙이니 女 관계중 환장해!!」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①머니투데이

프리미엄 인기정보 B

"급하게" 5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라!"
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준대서 밤에..충격!
코인규제 다음주 "고비" 다음은 1200%수...
비트코인 다음은 '이것' 1000%이상 수익...
가상화폐 다음은 '이것' 1300%폭등 "한방...
평소 적별 男, 다리꼬는女 X-RAY보니 충...
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해~
주식카톡방? 슈퍼개미들의 매매법은 따로

<18. 1. 22. 01:54 캡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111115545442&cast=1&STAND=MT>>

②아시아경제

실시간 인기정보

- 로또 구입비만 "1억" 300%돌려받는 방법있다?
- 김태희,비 "공할버버리" 가격이.. "충격"
- **남성 아랫도리에 붙이니 女 관계중 환장해!!**
- 당뇨 연구 "완치가가능해", 30일무료체험!!
- 비트코인 다음은 '이것' 1000%이상 수익날것
- 비트코인 거품꺼지면 "이것 폭등할것" 1월말에..
- 비트코인 규제되면 "이것 폭등할것" 1월 1300%..
- 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3번이상 "불끈!"

<18. 1. 23. 01:52 캡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22>09364832403>>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는 속칭 정력제라 주장하는 '진혜단'과 남성 성기능 개선 제임을 강조하는 '파워셀'을 광고하면서 「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 해~」 「남성, 아랫도리에 붙이니 女 관계중 환장해!!」 라는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로 제목을 달았다.

진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 아닌데도 “발기부전치료제 대체 건강식품 등장, 업계 ‘충격’”, “발기부전 치료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파워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남성 성기능 치료목적 개발, 부작용 없이 발기력, 지속력 향상” “수술 없이도 끼우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결국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머니투데이

<<http://land.dp25.kr/land/jinwpkd/index5.html?bna18=70>>

데일리토픽 **중년男 "조루·발기부전" 잡는 핵심성분 찾아.. 언론 '집중조명'**

- 발기부전치료제 대체 건강식품 등장, 업계 '충격'
- 男 발기원리에 도움되는 슷누에, 홍삼, 옥타코사놀, L-아르기닌, 황칠나무 등 황금비율 배합



2. 아시아경제

<<http://bgmedia.co.kr/event/dia/m01/?media=wt2>>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등 현 이등현

장 인 철	장 인 철
김 규 식	김 규 식
강 희	강 희
하 윤 수	하 윤 수
김 영 모	김 영 모
박 현 갑	박 현 갑
박 미 경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